한국문학논총 제67집(2014. 8) 77~106쪽

# 朝鮮時代 訟事小說의 判官 形象 硏究

張 延 鎬*

차 례

Ⅰ. 서론
Ⅱ. 王의 判官 역할 및 王의 판결 動機
Ⅲ. 伸寃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Ⅳ. 敎化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Ⅴ. 冤抑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Ⅵ.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王의 판관역할 및 판결에서 나타난 왕의 治國 이념, 판결동기를 살펴보고, 伸寃型, 敎化型, 冤抑型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判官의 형상을 살펴본 글이다.

조선시대 訟事小說에서 왕이 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國法이 곧 王法이라는 法觀念의 體現이다. 조선시대 王의 指示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되고, 또는 판결이 되었던 것이다. 王의 판결에서 그 시대 통치자들의 主流적인 治國경향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德治主義, 禮治主義를 治國理念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판결에서 動機를 중요시했고, '동기가 선하면 刑을 면제해 준다'(志善者免)는 '仁者의 刑罰'의식이 선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 上海商學院 한국어학과 교수

수 있었고, 惡을 응징함으로써 儒敎의 人倫道德과 禮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王의 노력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伸寃型 訟事小說에서는 判官이 정의로운 인물, 공정한 인물, 膽略과 智略이 뛰어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면서도, 사건 審理 과정에서 判官들은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방법의 결여를 보여주기도 한다. 敎化型 訟事小說에서는 판관을 '敎化派'에 속하는 인물로 刻印시키고, "仁愛"精神에 입각하여 人倫·道德을 고취하게 함으로써, 敎化를 충실히 실천해 사랑과 孝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물로 부각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冤抑型 訟事小說에서는 부패무능한 판관의 형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송사를 맡은 판관으로서 법집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며, 정의감이 결여된 자들이고, 뇌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이러한 판관 형상을 통해 그 시대 지방 관리들의 무식함, 法意識과 法知識의 결여를 알 수 있고, 부패한 관리들의 뇌물수수의 진상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송사소설, 판관, 왕, 덕치주의, 예치주의, 판결동기, 仁者刑罰, 仁愛, 교화, 부패

## Ⅰ. 서론

訟事小說에서 判官은 사건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判官은 지방관리로부터 王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다. 누가 판관을 하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공정한 판결이다. 判官은 法을 집행하는 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며, 외부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 判官 중에는 정직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해 사건을 심리하고, 정확하게 판결하는 인물

이 있는가하면, 무책임하게 대충 사건을 심리하고 근거 없이 주관판단에 의해 판결하는 인물도 있고,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하는 腐敗無能한 판관도 있다.

王이 訟事小說에서 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있는데, 이는 그들의 권력이 法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중대한 사건일 때는 王이 직접 판결했음을 알게 해 준다. 왕의 판결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禮 혹은 理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禮記』「曲禮」에 "분쟁과 소송에 대해서는 禮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지 않는다"(分爭辨訟, 非禮不決)고 했다. 이는 대체로 '禮'가 민·형사 소송의 審理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1] 유교의 德治를 실천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에 왕이 禮를 따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장화홍련전>과 같은 작품에서는 惡을 응징함으로써 儒敎의 人倫道德과 禮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王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조선시대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판관으로서의 王의 역할 및 德과 禮를 따른 판결을 살펴보고, 伸寃型, 敎化型, 冤抑型 訟事小說에서 나타나는 判官의 형상을 살펴볼 것이다. 李憲洪은 송사소설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主題的 性向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訟事小說의 결말구조의 類型을 伸寃型, 和解型, 冤抑型으로 분류하였다.[2] 和解型은 전체적으로 보아, 敎化중심으로 이야기가 展開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敎化型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작가는 플롯의 전개 과정, 특히 결말을 통해서 인간의 本性이나 行爲樣態,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태도나 방법 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말은 인물의 성격은 물론 주제의 표출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결말은 '작품의 주제가 극적으로 표출되는 계시' 또는 '顯現의 순간'(the moment of illumination)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3]으로써 작품의 主題

1)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中國法律文化探究』, 一潮閣, 1996, 6, 327쪽.
2)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硏究』, 三知院, 1997, 11, 198쪽 참조.

적 類型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訟事小說을 伸寃型, 敎化型, 冤抑型 訟事小說로 분류하고 각 類型의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判官의 형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伸寃型 類型의 訟事小說에서는 긍정적인 判官 형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기 맡은 바 직책을 다하고, 정의로우며 膽略과 지혜를 두루 겸비한 忠臣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判官들은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방법의 결여를 보여주기도 한다. 敎化型 類型의 訟事小說에서는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도 原告와 被告者를 人倫·道德으로 敎化함으로써 儒敎의 德과 禮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판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冤抑型 類型의 訟事小說에서는 부정적인 判官형상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은 법집행자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자들이고, 무능력하고 정의감이 없는 자들이며, 뇌물에 쉽게 넘어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주는 자들이다. 각 類型에 해당되는 判官 形象의 분석을 통해 그 시대의 통치이념, 法意識, 시대상황, 백성들의 기대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조선시대 다양한 송사사건과 송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判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Ⅱ. 王의 判官 역할 및 王의 판결 動機

봉건시대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專制權力의 最高의 대표자는 왕이었고, 그들이 최고의 立法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法律은 왕을 거쳐서 頒布되었다. 王命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되고, 행정지시가 되고, 또는 판결이 된다. 따라서 모든 法律은 국왕의 왕명으로 이루어진다.[4] 조선시대 立法, 行政 및 司法의 區別이 없이 모든 統治를 專制國王

3) 李憲洪, 위의 책, 196~197쪽 참조.

이 總攬함은 물론이었다.[5]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議政府를 두고 있었고, 議政府가 만인을 다스리는 百官을 통솔하고 있었지만 合議制에 의해 결정한 사항은 왕의 결재를 얻어 집행되었다. 왕은 봉건통치 질서를 强化하기 위해 法司를 설립하여 司法權을 행사하게 하였다. 中央法司로서는 司憲府, 義禁府, 刑曹, 漢城府, 掌隷院이 있고, 이 중에는 刑曹, 司憲府, 漢城府를 특히 三司라고 하였다. 地方法司로서는 觀察使와 守令이 각각 그 管轄區域內에서 一定한 犯罪(輕犯)에 대한 司法權을 行使하였다.[6] 司憲府는 裁判機關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義禁府는 王旨를 받들어야만 開廷하는 特別裁判機關이었던 만큼[7] 중대 사건은 왕에게 보고되고 王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訟事小說 <옥낭자전>, <김씨열행록>, <장화홍련전>등 작품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사건은 왕에게 보고되며 왕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옥낭자전>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부사다. 부사는 옥랑이 하옥된 남편을 감옥에서 빼돌린 죄를 물어 刑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옥랑의 供招를 듣고 그녀의 절행에 감동을 받는다. 그는 이는 비록 옛날의 烈女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 지니, 진실로 아름답고 희한한 일이라고 하면서 즉시 사연을 갖춰 기록하여 함경감사에게 장계를 올렸고, 그 장계를 본 함경감사도 크게 칭찬하면서 그 전후사연을 갖춰 조정에 주달한다. 왕은 옥랑의 사연을 듣고 만고에 드문 일이라 칭찬하면서 "시업이 비록 국법을 범하였으되 그 지어미의 아름다운 절행으로써 그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어 널리 포양(褒揚)하겠노라"[8]라는 판결을 내리

---

4)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博英社, 1974, 1, 18쪽.
5) 『韓國文化史大系Ⅱ,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92, 6, 178쪽 참조.
6) 徐壹敎, 위의 책, 9쪽.
7) 徐壹敎, 위의 책, 11쪽 참조.
8) <玉娘子傳>, ≪韓國古典文學大系≫(2), 小說集(Ⅱ)(전규태 編), 明文堂, 1991, 8, 291쪽.

고는 이시업은 서반당상(西班堂上)으로, 김옥랑은 정렬부인(貞烈夫人)으로 봉한다. 왕은 시업이 국법을 犯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옥랑의 절행을 아름다운 행실로 보면서 시업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벼슬을 주어 널리 포양(褒揚)까지 한다. 이는 왕이 刑罰보다도 인륜·도덕을 중요시하면서 德治를 실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씨열행록>에서도 왕이 판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옥매에 의해 김씨의 억울한 사건은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며, 황제는 신하 정인충을 보내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 정인충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황제께 사건의 시말을 고한다.

> 뎡인충이 모든 공쵸를 밧아 황뎨게 쥬달ᄒᆞ온ᄃᆡ 황졔 칙지를 나리시되 화녀ᄂᆞᆫ 교살ᄒᆞ고 뉴ᄐᆡ슈는 파직ᄒᆞ야 셔인을 삼고 김씨ᄂᆞᆫ 효렬부인을 봉ᄒᆞ고 옥ᄆᆡ는 죄를 ᄉᆞ하야 튱비졍여문을 쥬시라ᄒᆞ시고 김씨를 명부직쳡을 나리ᄉᆞ 닙시ᄒᆞ라 ᄒᆞ신ᄃᆡ[9]

황제는 친히 판결을 내려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김씨의 孝와 烈을 참작하여 김씨를 효열부인에 봉하기까지 한다. 옥매는 화씨를 죽이려다 장시랑을 죽이게 된다. 옥매의 죄는 살인죄에 해당되는데, 왕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옥매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忠婢旌閭門을 세워주기까지 한다. 왕의 이와 같은 판결에는 儒敎의 倫理道德을 宣揚하고, 시비의 주인에 대한 忠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옥낭자전>이나 <김씨열행록>에서 내린 왕의 판결에는 動機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동기가 선하면 형을 면제해 준다'(志善者免)는 '仁者의 刑罰'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옛시대 사람들은 사법 활동 중에서 구현되는 이러한 '어진 정치'를 보통 '어진 군주의 형벌'(仁者之刑)이라든가 '어진 군주의 사법

9) <김씨열행록>, ≪古典小說全集≫(金起東), 第二卷, 亞細亞文化社, 1980, 4, 18쪽.

활동'(仁者司法)이라 일컫기도 했다. '仁者之刑'에는 주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즉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며, 주로 동기의 선악에 따라 그 죄형의 경중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동기가 선하면 법에 위배되어도 처벌을 免해 주며, 동기가 악하면 법에 부합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10] <옥낭자전>에서 왕은 하늘같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한 몸을 던진 옥낭의 動機를 아름다운 절행으로 보고 그 죄를 免해 줄 뿐만 아니라 시업에게 벼슬까지 내려준다. <김씨열행록>에서 황제는 옥매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주인을 위해 저지른 살인임을 인정하는 한편, 惡人인 화씨를 죽이려다 장시랑을 잘 못 죽인 점을 참작하여 그녀의 죄를 免해주고 忠婢로 인정하여 忠婢旌閭門을 세워준다. 장시랑도 사실은 유씨와 병준을 불태워 죽인 살인자다.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畢竟 殺人을 했다. 왕은 이점을 옥매의 무죄 판결에 참작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장화홍련전> 역시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부사는 장화를 죽인 죄인 흉녀가 여타자별하여 임의로 처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에게 알리고 감사 또한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면서 조정에 알리게 되어 왕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 흉녀는 죄상은 만만불측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쇠는 교하여 죽이고 장화 형제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비는 방송하라.[11]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어린 장쇠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어미가 세운 계교에 따라 좌수가 시키는 대로 장화를 죽인 것이어서 적어도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음에도[12] 왕은 이를 무시하

---

10)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앞의 책, 201쪽 참조.
11) <장화홍련전>, ≪韓國古典文學大全集≫1(金圭泰), 中央圖書, 1986, 10, 444쪽.
12)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소아로서 나이 10세 미만은 죄를 용서하고 10세 이

고 장쇠를 교살하라는 극형을 내린다. 왕이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라”고 판결하는데, 후일을 징계하라고 한 것은 조선 후기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바로잡으려는 왕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儒敎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기강이 무너지면서 가족성원간의 갈등이 가심화 되었는데 왕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화를 죽일 구체적인 계교를 꾸민 사람은 장쇠의 어머니이지만 그것을 장쇠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은 아버지 배좌수다. 이는 배좌수도 장화를 죽일 음모에 가담했음을 말해준다. 법적으로 보면, 배좌수도 치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왕은 방송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홍련의 효심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로 그것이 배좌수를 방송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儒敎에 바탕을 둔 朱子學이 성행했고 그것이 政治理念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으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규범이 되었던 것이다. 朱子學은 유교의 가치체계를 존중하면서 인륜·도덕을 우주의 질서와 부합되게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정치철학의 이론을 구축하려 했다. 朱子學의 風土에서 禮意識이 고취되고 보급되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규범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법과 도덕 사이에 禮라는 독특한 中間公理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禮는 윤리의 法化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법의 윤리화와 과제를 실현해 주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전통사회는 禮敎를 治國의 要綱으로 쓰고 法刑은 禮敎를 도와주는 補助規範으로 파악하였으며,[13] 法을 道德規範이나 禮規範의 실천을 위한 보조물로 생각하고, 法은 道德規範이나 禮規範의 위반을 처벌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도덕이나 禮의 실천을 담보하는 强制裝置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

---

상은 형벌 등급을 줄인다.”는 조문도 있다.(丁若鏞, ≪역주 欽欽新書≫1, 1999, 8, 69조.) 장쇠의 나이가 10대이니 그 형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3)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3, 11, 94쪽 참조.

하였다.[14] <옥낭자전>이나 <김씨열행록>과 같은 작품을 통해, 왕이 治國에 있어서 강력한 法治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교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禮에 따른 禮治主義, 德治主義를 實行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왕이 흉녀를 능지처참하고 장쇠를 교살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강력한 法治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듯하지만, 그 의도를 살펴보면, 왕은 <장화홍련전>의 사건을 단지 한 가정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나라의 윤리 및 기강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했던 것이다. 하여 왕의 판결에는 흉녀 허씨를 처결함으로써 계모의 戒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나라의 윤리적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의 대가인 융은 "당자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거의 神콤플렉스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모든 것을 善·惡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惡人에게 대해서는 지옥의 불과 천벌을, 善人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낙원을 설교한다."[15]라고 한 바 있다. 왕은 善·惡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했으며, 惡德 계모에게 천벌을 내림으로써 이 세상 계모의 戒로 삼고, 殺一警百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다.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라"는 왕의 판결에서 이러한 목적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孔子는 "성인이 다스리고 교화할 때, 반드시 형벌과 정치를 함께 썼다. 가장 좋은 것은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禮로써 다스리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정치로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금지하는 것이다. ……교화하여도 변화하지 않고 인도하여도 따르지 않으며, 義를 해치고 풍속을 어지럽히면, 형벌을 사용한다"[16]고 했다. <옥낭자전>에서 왕은 유교의 덕

---

14)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博英社, 1980, 50~52쪽 참조(金哲洙, 『法과 社會正義』,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5, 7쪽에서 재인용).

15) 칼빈 S. 홀, 『융 心理學入門』(이용호 역), 백조출판사, 1980(설성경 · 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社, 1988,8, 255쪽에서 재인용).

16) "聖人之治化也, 必刑政相參焉, 太上以德敎民, 而以禮齊之, 其次以政導民, 而以刑禁之……化之弗變, 導之弗從, 傷義以敗俗, 于是用刑矣"(『孔子家語』, 「刑政」,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앞의 책, 49쪽에서 재인용)

목[17]을 기준 삼아 옥낭자가 감옥에서 남편을 탈옥시킨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를 아름다운 절행으로 규정하고 남편의 죄를 赦함과 동시에 그에게 벼슬을 주어 褒揚까지 한다. <김씨열행록>에서도 왕은 옥매의 주인에 대한 충성을 참작하여 그녀의 장시랑을 독살한 살인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忠婢旌閭門을 세워준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왕이 악덕 계모의 부모자식간의 義를 해치고 사회 풍속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형벌로 응징함으로써 종국에는 儒敎의 德과 禮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왕이 배좌수의 죄를 용서한 것은 자식의 효성스러움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선시대 儒家의 孝倫理思想이 통치자의 치국이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Ⅲ. 伸冤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伸冤型이란, 처음에는 정당한 측이 부당한 측의 농간으로 인해 恨이 맺히게 되나 종국에 이르러 그 정당성이 밝혀져 한이 풀리는, 즉 한의 맺힘에서 풀림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작품들을 말한다.[18] 伸冤型 訟事小說에서 判官은 비범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내는 智力과 膽略 및 能力이 뛰어난 판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英雄의 모습을 판관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장화홍련전>, <박문수전>, <김씨열행록> 등을 들 수 있다.

---

17) "어버이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임금은 禮를 지키고 신하는 충성하며,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남편을 좇으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하며, 윗사람은 은혜롭고 아랫사람은 순종해야 한다"(父慈子孝, 君禮臣忠, 夫義婦聽, 兄友弟恭, 長惠幼順)(『禮記』, 「禮運」,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앞의 책, 9쪽에서 재인용)

18) 李憲洪, 위의 책, 202쪽.

<장화홍련전>에서 장화는 계모에 의해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낙태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쇠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장쇠에게서 장화의 죽음을 알게 된 홍련은 장화가 빠져 죽은 연못에 투신해 죽는다. 장화·홍련 자매가 繼母 허씨의 음모에 의해 죽음을 당해 寃鬼가 되는 전반부의 과정이 바로 恨의 맺힘이며, 원귀의 雪冤呼訴로 인해 신임 전동호 부사가 사건의 전모를 밝혀 繼母 허씨와 그 所生들을 처벌하고 장화·홍련의 누명을 벗겨 주는 후반부가 恨의 풀림 과정이다.[19] 전동호는 장화·홍련 자매의 恨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전동호는 철산에 부임하자마자 홍련의 원혼을 만나게 된다. 홍련은 계모의 흉계에 의해 두 자매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아뢰고 신원해 줄 것을 호소한다. 전동호는 먼저 이방을 불러 진상을 조사한 다음, 배좌수와 계모를 소환하여 문초하는데 이 자리에서 배좌수와 계모는 거짓 증언[20]을 해 전동호의 사건 조사에 혼선을 빚게 한다.

전동호가 사건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게 되자 장화자매의 원귀가 다시 출현하여 낙태한 물건(쥐)의 배를 가르면 진위를 알 수 있다고 전해준다. 전동호는 원귀의 말대로 낙태한 물건의 배를 가르게 되고 그 배에 쥐똥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배좌수와 계모의 증언이 거짓 증인임을 알게 되며, 배좌수와 계모를 다시 문초해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자백 받는다. 전동호는 사건해결과정에서 해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원귀의 출현으로 본읍 관장이 기절하여 죽은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원하여 철산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원귀와의 만남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원귀의 제시로 사건을 끈질기게 조사해 끝내는 장화·홍련 자매의 恨을 풀어준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전동호의 담대함과 책임감이 돋보이고 있

19) 李憲洪, 위의 책, 202쪽 참조.
20) 배좌수는 두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하고, 계모는 '장화는 실행하고 부끄러워 스스로 집을 나가 못에 빠져 죽었고, 홍련은 장화의 행실을 좇아 야반도주하였기에 그 종적을 알 수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으며, 정의를 실현코자하는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전동호의 사건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 판관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첫째, 증거확보를 위한 함정수사나 탐문수사 없이 원귀의 계시에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전동호는 홍련의 원귀를 통해 계모가 흉계를 내어 큰 쥐를 튀하여 피를 많이 바르고 낙태한 형상을 만들었다는 계시를 받는다. 전동호는 배좌수와 계모를 잡아들여 문초하지만 계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되자 홍련 형제의 원귀가 다시 나타나 흉녀를 다시 불러 낙태한 물건의 배를 가르면 그 진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해준다. 전동호는 원귀의 계시에 따라 쥐의 배를 갈라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처음 조사에서 쥐의 배를 갈라 보았더라면 계모의 음모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전동호는 그리하지 않았다. 둘째, 장화, 홍련의 친아버지인 배좌수에게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두고 父女之情으로 설득하고, 장화, 홍련의 죽음을 추궁했더라면[21] 좀 더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전동호는 이를 무시했다.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동호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장화, 홍련의 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문수전>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선량한 양민 유안거, 유득주 부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茂朱 고을에 사는 천운서, 천동수 父子는 悖惡無道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다. 이들은 유득주에게 간통의 누명을 씌워 그 대가로 유안거, 유득주 父子의 아내를 강탈하여 혼례를 치르려고 한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유안거는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처를 죽이고, 아들과 자부를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려고 한다. 박문수는 유씨 父子가 혼례 전날 밤에 자결하려는 사정을 엿듣고 유

21) 전동호가 먼저 배좌수와 계모를 잡아들여 문초할 때, 배좌수는 두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했고, 전동호가 무슨 병으로 죽었냐고 물으니 배좌수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때 다잡아 추궁했어야 하는데 전동호는 이점을 소홀히 했다.

씨 父子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결심한다.

박문수는 무주 군수에게 오방신장(五方神將)의 군복 다섯 벌을 짓도록 명한 뒤, 네 명의 광대와 함께 神將 옷을 입고 구천동으로 간다. 박문수는 중앙 황제 대장군으로, 네 명의 광대는 사방신장(四方神將)으로 가장을 하고 천운서 부자가 혼례를 치르는 현장에 나타난다. 박문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괴악한 무리 두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사방신장(四方神將)에게 명하여 천운서 부자를 잡아낸 후, 무주 구천동 삼십리 밖에서 이들을 때려죽인 뒤 땅 속에 파묻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다. 천운서 부자를 때려 죽여서 땅 속에 파묻은 것은 惡은 땅 속에 매장하여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패륜(悖倫)한 행위에 대한 응징, 곧 인륜을 밝히는 과정을 <박문수전>은 보여주고 있는데, 천벌을 받은 천가 부자의 말로는 곧 인과보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인으로 등장한 천가 부자는 무력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22] 그렇다면 박문수가 응징한 것은 단순한 패륜아인 것이 아니라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을 마구 짓밟는 탐관오리였던 것이다. 작품에서 박문수는 탁월한 능력과 지략 및 판단력을 겸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약한 자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고, 惡人을 懲治하는 정의의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문수를 통해 정의적이고 유능한 판관의 출현을 갈구하는 일반 백성의 영웅 기대심리를 反映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기록된 야담집과 최근에 채록하여 정리된 설화집에 수록된 박문수 설화가 300여 편이 되는 것[23]을 보아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불의한 자를

22)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 신원(伸寃)과 복수의 이야기」(고석규, 설성경, 심희기, 육재용 등,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6, 201쪽 참조.

23)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암행어사 박문수」, (고석규, 설성경, 심희기 등,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6, 134쪽 참조).

징치(懲治)하는 영웅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박문수전>에서 박문수 역시 사건해결 과정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문수는 단지 피해자인 유안거의 말만 듣고 성급히 천운서 부자를 처단함으로써 세밀한 사건 조사가 결여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증거 확보를 위한 탐문수사도 없었고, 천운서 부자에 대한 審問과정도 누락되었다. 客觀적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문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을 처리했던 것이다. 하진만 박문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고, 그의 영웅 형상은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

<김씨열행록>은 김씨의 孝와 烈에 얽힌 사연을 서술한 작품이다. 김씨는 남편이 살해되자 살인자를 밝혀내기 위해 몰래 수사를 펼친다. 그녀는 끝내 남편을 살해한 자를 밝혀냈고, 모든 음모가 유씨부인이 꾸민 것임을 알아낸다. 김씨는 사건의 진상을 시아버지 장시랑에게 알렸고 장시랑은 후처 유씨와 그 아들을 불태워 죽인다. 장시랑은 화씨를 후처로 맞아들이는데 이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화씨는 장시랑이 며느리 김씨와 매사를 의논하고 자기를 소외하는데 불만을 품고 가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김씨를 모함하려고 한다. 김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侍婢 옥매는 화씨를 毒殺하려고 했는데 그만 장시랑이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게 된다. 화씨는 김씨를 죽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 죄를 김씨에게 덮어씌우고 유태수를 꼬드겨 김씨를 하옥시킨다. 옥매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수는 죽은 누이 유씨의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 김씨를 하옥시킨 것이다. 옥매도 옥에 갇히게 되는데 雪冤을 위해 옥졸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와 닮은 동생을 대신 옥에 남게 하고 불철주야로 상경하여 승문고를 울리고 황제께 얼울함을 알린다. 옥매는 한낮 侍婢 신분이지만 부당한 횡포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고, 그녀의 형상을 통해 조선 후기 각성해 가는 여성상, 즉 여성의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황제는 옥매가 진술한 사연을 듣고 진노하여 즉시 刑部侍郎 정인충을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정인충은 유태수, 화씨를 옥매와 대질 신문하여 죄행을 자백 받고, 사건의 시말을 황제에게 주달한다.

> 뎡인충이 모든 공쵸를 밧아 황뎨게 쥬달ᄒᆞ온ᄃᆡ 황졔 칙지를 나리시되 화녀ᄂᆞᆫ 교살ᄒᆞ고 뉴ᄐᆡ슈는 파직ᄒᆞ야 셔인을 삼고 김씨ᄂᆞᆫ 효렬부인을 봉ᄒᆞ고 옥ᄆᆡᄂᆞᆫ 죄를 ᄉᆞ하야 튱비졍여문을 쥬시라ᄒᆞ시고 김씨를 명부직쳡을 나리ᄉᆞ 닙시ᄒᆞ라 ᄒᆞ신ᄃᆡ[24]

황제가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정인충의 세밀한 사건조사와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정인충의 장계를 根據로 화녀를 絞殺하고 유태수는 파직시킨다. 정인충이 유태수의 직권 남용 및 터무니없는 죄를 김씨에게 덮어씌운 것을 정확히 조사해 냈기 때문에 유태수에 대한 응징이 가능했던 것이다. 정인충은 法庭調査(法庭에서의 대질 심문)를 통해 화녀의 죄를 자백 받았고, 화녀에게서 유태수의 김씨 謀害 가담 사실을 알게 된다. 法庭調査는 人證物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그 手法과 形式은 다양하다. 정인충은 法庭調査라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인충의 책임감과 공정성, 지혜롭게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인충의 형상은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태수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Ⅳ. 敎化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敎化型은 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 교훈적 의

24) <김씨열행록>, ≪古典小說全集≫(金起東), 第二卷, 亞細亞文化社, 1980, 4, 18쪽.

도에 의해 송사를 중재하고 원고와 피고인을 교화하는 것이다. 李憲洪은 이를 和解型으로 분류하고, 和解型은 대립하는 두 세력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善한 인물인 재판관이 중재하고 이들을 교화하는 것[25]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런 類型의 訟事小說에서는 판관을 통해 原告와 被告人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반성·교화시키려는 강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敎化는 유교 學派가 提唱하는 일종의 治術로서 그 본질은 德政을 실천하는 것이다.[26] 즉 德으로 民衆을 교화하여 忠·孝가 충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類型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진대방전>이다.

<진대방전>에서 대방의 어머니는 放蕩兒인 대방을 哀切하게 훈계하지만 대방은 悔改하지 않고 더욱 放蕩하게 세월을 보낸다. 대방의 어머니는 憤을 참을 수 없어 대방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타이르려고 했으나, 아들이 집에 없어서 양녀(楊女)에게 五倫行實과 三從之道를 말하면서 사나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타일렀다. 대방이 집에 오자 양녀는 "無道한 家夫를 꾀어 母弟를 내쳤으니 告官하여 綱常罪로 陵遲의 刑罰을 받게 하겠다"라고 어머니가 말했다면서 남편에게 告했다. 대방은 처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모친이 비록 날 낳았으나 무슨 情分이 있으며, 허물 없는 우리 夫婦를 왜 極律로 몰아 죽이려 하느뇨"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구박하였다. 대방의 어머니는 대방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노하여 대방과 양녀를 처벌해 줄 것을 관가에 호소한다.

대방은 분명 不孝罪를 저질렀다. 不孝罪는 十惡에 속하는 중대 범죄이다. 明律은 자식이 부모를 욕하기만 해도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한 형벌을 적용했고[27] ≪經國大典≫에서도 "아들과 손자, 아내와 첩 또는 노비로서 부모나 가장을 고발하는 것은 반역음모와 역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형에 처한다."[28]라고 하여 아들이나 그의 처가 부모를 고발만

25) 李憲洪, 위의 책, 198~207쪽 참조.
26) 伍成泉,『道教的道德教化研究』, 知識産權出版社, 2013, 8, 29쪽 참조.
27) 郭建, 姚榮濤, 王志强 著,『中國法制史』, 上海人民出版社, 2000, 333쪽 참조.

해도 교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방의 처가 대방에게 시모가 “綱常罪로 陵遲의 刑罰을 받게 하겠다”는 거짓말을 告한 것도 범죄에 속한 것이고, 대방이 어미한테 마구 행패를 부린 것도 불효로서 중범죄에 속하지만 태수는 대방과 양녀에게 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태수 金義伯은 오히려 대방과 그의 어머니, 양녀와 대방의 동생을 불러놓고 순임금, 곽거, 맹종, 유은, 원각 등의 예를 들면서 孝子, 賢母, 烈婦의 도리를 가르치고는, 敎言을 잊지 말고 善人이 되라고 하면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태수는 “仁愛”精神에 입각한 “敎化”적인 수단으로 대방 一家를 설득시킨 것이다. 판관 金義伯의 교화를 받은 대방은 효자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양녀 또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奉養하고 남편을 禮儀로 섬겨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金義伯은 대방 일가의 갈등이 윤리적 갈등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仁愛”精神에 입각한 情感 “敎化”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은 것이다. 가족 내의 人倫갈등이나 윤리적 갈등은 情感敎化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이 곧 倫理共同體이기 때문이다.[29]

<진대방전>의 핵심은 太守 金義伯이 대방의 家族을 呼出해 놓고 옛날 中國의 賢母, 烈婦, 弟恭, 孝子의 예를 들어가며, 일일이 懲戒한 곳에 있는 것이니 총 19면 중에서 15면이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法窓의 閑話에 지나지 못하나, 法廷에서 說諭한 설명은 三綱五倫을 强調한 儒敎思想의 발로이고, 德治를 표방한 것이다.[30] 金義伯은 ‘敎化派’에 속하는 법집행자라고 할 수 있다. ‘敎化派’의 정치이념은 ‘세상에 도덕이 행해지는 것’이며, 道德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형벌과 소송이 없는 태평시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들이 實現시키고자 한 ‘道德’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仁을 행하는 근본’인 ‘효도와 공경’,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충성으로

28) 譯註 ≪經國大典≫, 윤국인 譯註, 홍기문, 김석형 監修, 여강, 2000, 4, 260쪽
29) 徐忠明, 『情感, 循吏与明淸時期司法實踐』, 上海三聯書店, 2014, 1, 139쪽 참조.
30)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集文堂, 1986, 5, 379~380쪽 참조.

써 임금을 섬기며”[31], “인륜으로써 가르치니,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고”[32], “어버이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형은 아우를 잘 보살피고 아우는 공손하며,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이를 따르며, 나이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충성하는”[33] ‘十義’ 등이 그 내용이다.[34] 金義伯은 人倫을 실천하고자 했고, 敎化를 통해 자애로운 어버이, 효성스러운 자식, 아우를 잘 보살피는 형, 의로운 남편을 순종하며 따르는 아내를 만들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禮와 德으로 家族의 秩序와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작품에서 太守 金義伯은 진대방 일가족을 교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가족에 한정된 교화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전통적 윤리의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윤리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倫理敎化를 鼓吹하고 있는 것이다. <진대방전>의 異本이 무려 40여 종이 넘는다는 사실[35]을 보아도 그 時期 敎化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傾向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윤리교화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고 생활화하게 하기 위해 향약(鄕約)이란 제도를 이용했다. 실제로 조선조의 향약은 가정생활의 기본윤리에 이르기까지 그 대체를 규정했으며, 실정법의 규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효행한 이를 조정에 알려 그 마을과 집 앞에 정문(旌門)이나 정기(旌旗)를 세운 것도 여러 향리에 본을 보여 풍속을 교화하고자 한 의도에서다.[36] 이는 조선시대 禮治主義, 德

31) “君使臣以禮, 臣使君以忠”(『論語』「八佾」)
32)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孟子』「騰文公」)
33) “父慈子孝, 兄良弟弟, 夫義婦聽, 長惠幼順, 君仁臣忠”(『禮記』「禮運」)
34)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앞의 책, 68~69쪽 참조.
35) 李憲洪, 위의 책, 209쪽 참조.
36)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4, 148쪽.

治主義를 실천하고자 한 왕의 治國이념에 따른 것이며, <진대방전>에 등장하는 判官 金義伯은 왕의 忠臣으로서 倫理敎化를 통해 禮治主義, 德治主義를 충실히 이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Ⅴ. 冤抑型 訟事小說의 判官形象

冤抑型은 정당한 제소자 또는 피소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類型의 訟事小說은 행위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자가 겪는 억울함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37] 여기서는 주로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송사를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판관의 형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품에 등장하는 판관은 무능력하고, 비리와 횡포를 일삼는 자들이며, 뇌물에 눈이 어두워 무원칙하게 판결을 내리는 인물들이다. 이런 類型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鼠大州傳>, <유연전>, <황새결송> 등이다.

<鼠大州傳>에서 서대주는 다람쥐들이 부지런히 일해 모은 알밤 오십여 석과 비단, 보배 등을 하루밤새 모두 훔쳐간다. 이에 분노한 타남주는 서대주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작은 다람쥐를 서대주의 소굴에 보내 동정을 탐색하게 했다. 도적의 무리가 서대주의 무리임을 알게 된 타남주는 원님에게 고소장을 올린다. 고소장을 본 원님은 즉시 刑吏에게 명하여 서대주를 잡아들여 하옥시키고, 다음날 서대주를 심문하는데, 서대주는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의 결백을 호소한다. 그는 28대조가 나라를 위해 쌓은 업적, 27대조의 유명세, 26대조의 부유함을 역설하면서 자기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님을 강조했고, 자기 대에 와서는 다섯 아들과 큰딸이 죽고, 둘째 딸이 실종되었으며, 조강지처가 초창(肖瘡), 하창(荷瘡),

37) 李憲洪, 위의 책, 198~199쪽 참조.

학질(瘧疾), 치질(痔疾) 등 무려 36가지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으니, 이는 전례 없던 변괴이자 참혹한 일이라고 하면서 가족의 불행함을 강조했다. 선조의 업적과 유명함 및 부유함을 역설한 것은 원님으로 하여금 나라의 유공자 가문이고, 부유한 가문으로서 절대 도적질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자식들이 죽고 처가 온갖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한 것은 원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님은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서대주를 무죄로 판결하여 놓아주었고, 죄 없는 타남주는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낸다.

사건의 접수과정과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원님의 태도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님이 타남주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올린 고소장을 보아하니 진실로 불쌍하도다. 서가(鼠哥) 놈을 속히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도다.”[38] (한문본)라고 하면서 타남주를 동정하는 한편, 서대주의 죄를 엄히 물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형리에게 “이 같은 강도 놈은 범연하게 잡아올 수 없을 것이니, 사령(使令) 중에 건장한 자를 골라 보내되, 미적대다 그놈이 숨어버리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하라”[39] (한문본)는 깐깐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심문과정에서 원님은 서대주의 말만 믿고 타남주와 대질 심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원님은 단지 잘못된 주관 판단에 의해 판결을 했고, 피해자인 타남주를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 유배를 보낸 것이다. 작품에서 원님의 무능하고, 무원칙적인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원님의 형상을 통해 조선시대 地方官의 무능력함과 무책임, 法律 素養의 결핍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타남주는 고소장의 첫머리에서 “외람되게도 만사를 무릅쓰고, 밝은 정사를 하시고 지극히 공평하신 원님께 우러러 아뢰나니 잠시나마 살펴주

38) 신해진 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3, 210쪽.
39) 신해진 편역, 위의 책, 210쪽.

십시오.”라고 하면서 원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고, 원님의 공정한 판결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원님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판관으로서의 양심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편 작가는 서대주를 고을 원의 비호를 받아 무죄방면되게 함으로써 양반토호들이 수령권과 결탁하여 향촌내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40]

조선시대에 地方官인 觀察使와 守令도 行政과 司法을 겸장하였고, 律官·刑官 등이 司法事務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이어야 할 律官·刑官 등의 법률에 관한 소양은 그 程度가 甚히 낮았으며, 따라서 恣意的인 法運用이 행하여졌던 것이다.[41] 實錄에 의하면, 太祖 7년(1398)4월에 “治獄者 率多無學之人 不能精熟律文 以當其任 爲掌刑之官 又不肯留意於律文”[42]이라고 하면서 법관들 중에 학문이 없는 자들이 많으며, 律文을 익히 알지 못하고 그 소임을 맡고 있으며, 刑官도 律文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鼠大州傳>은 이러한 類型에 속하는 무식하고, 사건 審理의 절차와 法의식이 결여된 무능한 판관의 형상을 잘 그려내고 있다. <유연전>의 간관(諫官)과 추관(推官)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유연전>에서 주인공 유연은 친형이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자 처가의 재산을 노린 매부에 의해 친형을 죽였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을 당하고 만다. 유연은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노력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리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 첫 번째 인물이 諫官이다. 諫官은 사건을 재심리하여 評議를 내리기도 전에 왕에게 가짜 유유를 진짜 유유라고 했고, 아우 유연은 장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

40) 민찬, 「<서대주전>의 전승경로와 사회적 성격」,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3, 217쪽 참조.
41) 徐壹敎, 앞의 책, 10쪽 참조.
42) 實錄一, 太祖 卷十四 七年 四月 丁丑(二十一日). (徐壹敎, 앞의 책, 10쪽에서 재인용)

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못된 꾀를 내어, 형을 관아에 고발했다고 했으며, 부사는 옥사를 잘 못한 죄를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 왕은 諫官의 말을 믿고 이를 윤허함으로써 유능한 부사는 유연의 사건 심리를 맡을 수 없게 되며, 유연은 하옥된다. 두 번째 인물은 추관(推官)이다. 추관은 처음에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유연과 첫째 누이의 남편 달성령(達成令) 지, 그리고 종매부 심륭(沈薩), 서족(庶族)인 김백천(金百千)을 차례로 호출하여 사건을 조사한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가 작성한 조서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륭과 백천이 모두 '진짜 유이다'라고 하니 이는 유유(柳游)가 분명한데, 연만 홀로 진짜 유가 아니라 하여 길에서 결박 지우고 관아에 고발했으니 살해하고 그 흔적조차 없앤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곤장을 치고자 합니다."[43] 지·륭과 백천, 세 사람의 말만 듣고 가짜 유를 진짜 유로 판명 짓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그 전에 부사 박응천이 이미 유유의 친척과 고향사람들을 불러놓고 가짜 유와 대면을 시켜 진위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으며, 증거 확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일단 가짜 유유를 잡아 진위를 가렸어야 했고, 친척들이나 고향사람들을 다시 불러 가짜 유유의 진상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추관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 유연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곤장 마흔 두 대를 맞고 견딜 수 없어 유연은 없는 죄를 있다고 자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죽게 된다.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하고 무능한 추관에 의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억울한 사건이 빚어진 것이다.

冤抑型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判官이 위의 두 작품에서 언급된 원님이나 諫官, 추관(推官)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뇌물에 눈이 어두워 善惡을 가리지 않고 惡의 勝訴로 판결하는 판관도 있으며, 정치권력으로 편

43) 신해진, 『朝鮮朝 傳系小說』, 월인, 2003, 12, 60쪽.

파적 송사처결하는 부도덕한 판관도 있다. <황새결송>에서 정당한 제소자인 시골 부자는 억울하게도 형조관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송사에서 敗訴당하고 만다. 시골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惡漢 친척을 중앙관서인 형조에 제소하여 후환을 없애고자 한다. 하지만 판관인 堂上은 사건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심리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惡漢 친척의 편에 서서 부자에게 惡漢의 모든 요구를 들어 주도록 판결한다. 판관은 부자에게 "너ᄂᆞᆫ 조업을 가지고 ᄃᆡᄃᆡ로 치부ᄒᆞ여 만셕군의 니로니 족히 흉년의 일읍 ᄇᆡᆨ셩을 진율도 ᄒᆞ려든 너의 지친을 구졔치 아니ᄒᆞ고 송ᄉᆞ를 ᄒᆞ여 물니치려 ᄒᆞ니 너갓치 무도ᄒᆞᆫ 놈이 어ᄃᆡ 이시리오"[44]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자를 훈계하며, "저놈 달나ᄒᆞᄂᆞᆫ 되로 난화쥬고 친척간 셔로 의를 상치 말나"[45]라고 하면서 惡漢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서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부자로서 흉년에 백성을 진율할 수도 있는데, 친척 하나 구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친척 간에 의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도 도리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송사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惡漢이 부자의 절반 재산을 갈취하려는 협박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판관은 惡漢의 의도를 파악했어야 했으며, 마땅히 惡漢의 죄를 물었어야 했던 것이다. 판관인 堂上이 그리할 수 없었던 것은 惡漢의 뇌물에 이미 양심과 正義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부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 '꾀꼬리와 따오기의 목청자랑'이라는 우화를 관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억울하게 당한 恨을 푼다. 부자가 들려준 이야기 내용을 보면,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노래솜씨가 뛰어나다고 우기다가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되자 황새에게 일임하여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목청이 제일 안 좋은 따오기가 자기가 질 것이 뻔함을 알고 황새에게 뇌물 공세를 펼친다. 뇌물을 받은 황새는 목청을 제대

44)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4,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5, 260쪽.
45) 김동욱 편, 위의 책, 260쪽.

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따오기의 우승을 선언한다. 이야기 끝에 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즘싱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집의 오결ᄒᆞ여 그 쇠ᄭᅩ리와 버국ᄉᆡ의긔 못ᄒᆞᆯ 노릇 ᄒᆞ여시니 엇지 앙급ᄌᆞ손 아니ᄒᆞ오릿가 이러ᄒᆞ온 즘싱들도 물욕의 잠겨 틀닌 노릇슬 잘 ᄒᆞ기로 그놈을 ᄀᆡ아들 쇠ᄌᆞ식이라 ᄒᆞ고 우셧이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ᄎᆞᄒᆞ오니 소인의 일은 발셔 판이 나ᄉᆞᄆᆡ 부졀업슨 말ᄒᆞ여 쓸ᄃᆡ 업스니 이졔 물러가ᄂᆞ이다.”[46] 사실상 부자는 동물우화를 삽입하여 황새를 판관인 堂上에 비유했고, 따오기를 惡漢에 비유했으며, 뻐꾸기와 꾀꼬리는 자기 자신에 비유했던 것이다. 부자가 뇌물을 받고 오결한 따오기를 질책한 것은 堂上의 파렴치한 소인배 행위를 꼬집은 것이다. 이처럼 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賂物의 위력이 송사의 진행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판관의 오판을 유도하는 결정적 매개항의 구실을 하고 있다.[47] 결국 송사형 우화소설이 담고 있는 궁극적 의미는 빈부의 양극화 과정에서 비롯된 향촌민간의 심각한 갈등, 그리고 그러한 다툼의 해결임무를 떠맡고 있던 중세 봉건 통치체제조차도 새로운 힘인 부에 의해 농락되던 조선 후기 세태를 우의적으로 그려 내고 있던 것이다.[48]

## Ⅵ. 결론

위에서 조선시대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王의 판관역할 및 판결에서 나타난 왕의 치국 이념, 판결동기를 살펴보았고, 伸寃型, 敎化型, 冤抑型 訟事小說에서 나타나는 判官 형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6) 김동욱 편, 위의 책, 263쪽.
47) 李憲洪, 앞의 책, 263쪽 참조.
48) 정출헌, 「동물 우화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역사적 전개」, (省吾 蘇在英敎授 還曆記念論叢 刊行委員會, 『古小說史의 諸問題』, 集文堂, 1993, 11, 793쪽).

첫째, 조선시대 訟事小說에서 왕이 판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접 판결을 내린다. 法觀念에 있어서 國法은 곧 王法이라는 觀念이 訟事小說에 잘 반영되고 있다. 봉건시대 專制權力의 最高의 대표자는 王이었던 만큼, 왕이 최고의 立法權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王의 指示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되고, 또는 판결이 되었던 것이다. 王의 판결을 통해 그 시대 통치자들의 主流적인 治國경향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의 판결을 보면, 가혹한 刑罰보다도 德과 禮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德治主義가 주류적인 경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옥낭자전>이나 <김씨열행록>을 통해서 왕의 판결에서 動機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동기가 선하면 형을 면제해 준다'(志善者免)는 '仁者의 刑罰'의식이 선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伸寃型 訟事小說에서는 判官이 정의로운 인물, 공정한 인물, 비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해 내는 智力과 膽略, 탁월한 能力의 소유자인 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英雄의 모습을 판관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화홍련전>, <박문수전>, <김씨열행록> 등 작품을 통해 전동호, 박문수, 정인충 등 정의로운 판관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판관의 활약으로 억울한 사건은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審理 과정에서 判官들은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방법의 결여를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敎化型 訟事小說의 판관은 철저히 '敎化派'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의 교화에는 原告와 被告人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반성·교화시키려는 강한 목적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진대방전>에서 太守 金義伯은 유교의 禮가 넘치고, 仁義道德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刑罰과 訴訟이 없는 태평시대를 만들어 보려는 애절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金義伯은 대방 일가의 갈등이 윤리적 갈등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형벌 대신, “仁愛”精神에 입각한 情感적이고 윤리적인 “敎化”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대방 一家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 것이다. 작품은 金義伯의 敎化를 통해 조선시대 倫理敎化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그 傾向性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넷째, 冤抑型 訟事小說에서는 부패 무능한 판관의 형상을 작품 속에 잘 그려내고 있다. <鼠大州傳>의 원님이나 <유연전>의 諫官, 推官과 같은 인물을 통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판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황새결송>의 堂上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 善惡을 가리지 않고 惡의 勝訴로 판결하는 판관의 형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송사를 맡은 판관으로서 책임감과 정의감이 결여된 자들이고, 뇌물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다. 이러한 판관 형상을 통해 중세 봉건지배층 및 지방 관리들의 무식함, 法意識과 法知識의 결여를 알 수 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지방 관리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范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 譯, 『中國法律文化探究』, 一潮閣, 1996, 6, 68~69쪽, 201쪽, 327쪽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硏究』, 三知院, 1997, 11, 196~197쪽, 198~207쪽, 263쪽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博英社, 1974, 1, 9, 11, 18쪽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3, 11, 94쪽

『韓國文化史大系Ⅱ,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92, 6, 178쪽

丁若鏞, ≪역주 欽欽新書≫1, 69조, 1999, 8

金哲洙, 『法과 社會正義』,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5, 7쪽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 신원(伸寃)과 복수의 이야기」(고석규, 설성경, 심희기, 육재용 등,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6, 201쪽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암행어사 박문수」, (고석규, 설성경, 심희기 등,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6, 134쪽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社, 1988,8, 255쪽

郭建, 姚榮濤, 王志强 著, 『中國法制史』, 上海人民出版社, 2000, 333쪽

譯註 ≪經國大典≫, 윤국인 譯註, 홍기문, 김석형 監修, 여강, 2000, 4, 260쪽

朴晟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集文堂, 1986, 5, 379~380쪽

신해진 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3, 210쪽

신해진, 『朝鮮朝 傳系小說』, 월인, 2003, 12, 60쪽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4, 148쪽

민찬, 「<서대주전>의 전승경로와 사회적 성격」,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3, 217~218쪽

정출헌,「동물 우화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역사적 전개」, 省吾 蘇在英敎授 還曆記念論叢 刊行委員會,『古小說史의 諸問題』, 集文堂, 1993, 11, 793쪽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 4,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5, 260~263쪽

徐忠明,『情感, 循吏与明淸時期司法實踐』, 上海三聯書店, 2014, 1, 139쪽

伍成泉,『道敎的道德敎化硏究』, 知識産權出版社, 2013, 8, 29쪽

<Abstract>

# The Study of Judges' Image in Lawsuit Novels of the Joseon Dynasty

Zhang, Yan-Gao*

Focusing on King's idea of ruling a nation and the motive of judgment in lawsuit novels of Joseon Dynasty, this paper looks into judges' image in such types of lawsuits novels as vengeance ending, reformation ending and injustice ending.

The fact that sometimes the King took charge of a judge in lawsuit novels of Joseon Dynasty is the embodiment of the law concept that the national law is just the kings law. In Joseon Dynasty,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king's order could be the law and the judgment. Through the King's judgment we can see the main idea of ruling a nation of sovereign in that dynasty, and in Joseon Dynasty they preferred virtuous leadership. Besides that, the King considered the motive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a judgment. The consciousness that if the motive was kind, then the punishment can be avoided showed the idea of the punishment of benevolent people. And through the punishment of evil, people can know King's efforts to make a world full of ethics, morality and manners of Confucianism.

In lawsuit novels of vengeance ending, judges' image was magnified as a righteous, fair and extraordinary character. But during the judgment of cases, judges' lack of security of evidence and

* Shanghai Business School

scientific and sensible methods of criminal investigation also havebeen shown. In lawsuit novels of reformation ending novels, judges′ image was magnified as reformation. The characters magnified are people based on kind love, through instilling ethics and morality to reform others faithfully and to make a society full of filial piety. In lawsuit novels of injustice ending, judges′ image was magnified as corruption and incompetence. Those judges who took on lawsuits in regard to property were actually not qualified as the legal executor with no sense of justice and were overruled by bribe. Through those images of judges, we can see the ignora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the absence of legal consciousness and legal knowledge, and the fact of corrupt officials′ accepting bribe in that dynasty.

Key Words : lawsuit novels, judge, King, clemency, virtuous leadership, motive of judgment, the punishment of benevolent people, charity, reformation, corruption

▌논문접수 : 2014년 7월 1일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